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안)**



2023.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서울시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선정 결과에 의한 마포구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에 전면 대응함과 동시에, 마포구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보다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 방안을 검토하여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 구성 개요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구성 경과

- 2023. 2. 1. 제259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2023. 2. 7.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2023. 2. 8. 제260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II 주요 활동 방향

- 집행부 대응 방안 현황 파악 및 종합 검토 · 분석
-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 기존 쓰레기소각장 현장 점검 및 문제점 파악
- 건립 백지화를 위한 민·관 협력 공동 대응 및 지원방안 검토
-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 정책 현황 파악
- 그 밖의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추진에 필요한 사항

Ⅲ

세부 활동 계획

□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행정지원		
			전문위원	의사담당	속기 및 차량
최은하	차해영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장정희, 한선미	신준호	박철호	김정숙 이현미 추형한

□ 활동기간 : 위원선임일로부터 1년 (2023. 2. 7. ~ 2024. 2. 29.)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가능

□ 세부 추진일정 및 의사일정 계획

일 정	활 동 내 용	비 고 (서울시)
2023. 3월	-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 집행부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입지 지정 고시 예정 (5월중)
2023. 4월	-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관련 시설 현장 방문의 건 - 관련시설 현장 방문 ·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차고지 방문 등	
2023. 7월	- 주민간담회 실시 · 주민협의체 등과 연대 방안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	설치 기본 계획 수립 ▽ 타당성 조사 ▽ 환경 영향 평가 ▽ 계획 승인
2023. 9월	- 타지자체 방문 추진 · 폐기물 처리 우수지자체 견학 및 정책 현황 파악	
2023. 10월	- 간담회 실시	
2023. 11월	-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집행부 추진경과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사업 시행 (’24.6월)
2024. 1월	-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최종)	
2024. 2월	- 특위 회의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 상기 일정은 서울특별시 및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활동방법

-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 서류제출 요구 및 열람
- 관내 시설 현장점검 및 타 지자체 시설 방문 실시
- 필요시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IV 행정사항

□ 관련부서 자료제출 요구

- 「지방자치법」 제48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

□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요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1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출석관계 공무원의 범위: 대상시설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
- 출석일시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 출석장소 : 마포구의회
- 출석사유 :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업무보고, 현장방문 추진, 의견청취 등

□ 소관부서

- 총괄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기피시설 TF팀 포함)
- 협조부서 :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도시계획 관련)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환경영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경비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총 계		2,952,000원	
간담회비		2,700,000원	30,000원 × 9명 × 10회
여비	의원	소 계	196,000원
		일 비	140,000원
		식 비	56,000원
	직원	소 계	56,000원
		일 비	40,000원
		식 비	16,000원
		20,000원 × 7명 × 2일	
		8,000원 × 7명 × 2일	
		20,000원 × 2명 × 2일	
		8,000원 × 2명 × 2일	

※ 예산과목: 구의회사무국, 선진의회상정립,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V

협조사항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업무보고 : 신규 소각장 건립 반대 총괄부서로서 업무보고 자료 제출
- 현장 및 시설 방문 계획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지원
 - 시설 방문 일정 조율 및 사전 협의 준비사항
 - 그 외 행정지원 등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업무보고 : 신규 소각장 설치의 도시계획 관련 사항 검토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 업무보고 : 신규 소각장 설치의 환경영향 관련 사항 검토

붙임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2년 8월 31일, 서울시는 일방적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마포구 건립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입지 선정 발표는 마포구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폐쇄 불통행정의 결과이며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다.

○ 서울시는 2019년 5월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해 공모하였으나, 공모 신청한 자치구가 없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예민한 문제를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숙의 과정 없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2020년 12월 15일 설치하였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에도 서울시의 쓰레기문제를 일방적으로 마포구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서울시의 부당한 결정에 마포구의회는 2022년 9월 2일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를 시작으로 민·관이 하나 되어 서울시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면적 대응에 돌입한다.

○ 앞으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과 함께 서울시의 편파적 밀실·졸속 행정을 비판하고, 신규소각장 선정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 이에 마포구의회는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과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과 위법성을 파헤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고자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한다.

2023. 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09.2.5>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3. 22.>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출석답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